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48

발의일자: 2024. 5. 28.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 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위기가구 발견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5조 ~ 안 제7조).
- 마.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2024. 5. 29.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 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포함한 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 초보장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 한 경우
 - 2.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 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시호보장급이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시회보장급여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 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 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 · 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2023. 6. 13.〉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 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 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 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 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 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없다. <개정 2017. 3. 21.>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혐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사회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 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 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